

2021 제2호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맞춤형 법제정보

- 미국 COVID-19 대응 임차료 관련 조치 현황
- 영국 COVID-19 대응 임차료 관련 조치 현황
- 프랑스 COVID-19 대응 임차료 관련 조치 현황

외국법제동향

- 일본 바이오뱅크 및 인체 시료·정보 관련 법제 동향
- 일본 「디지털플랫폼법」의 주요 내용 및 최근 논의 동향
- 미국 「무역확장법」과 수입규제 법제 동향
- 미국 「국방획득인력전문자격법」과 국방획득전문가 양성제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1 제2호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신청기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프랑스 COVID-19 대응 임차료 관련 조치 현황

황재훈 | 만해법률사무소변호사, 법학박사

I.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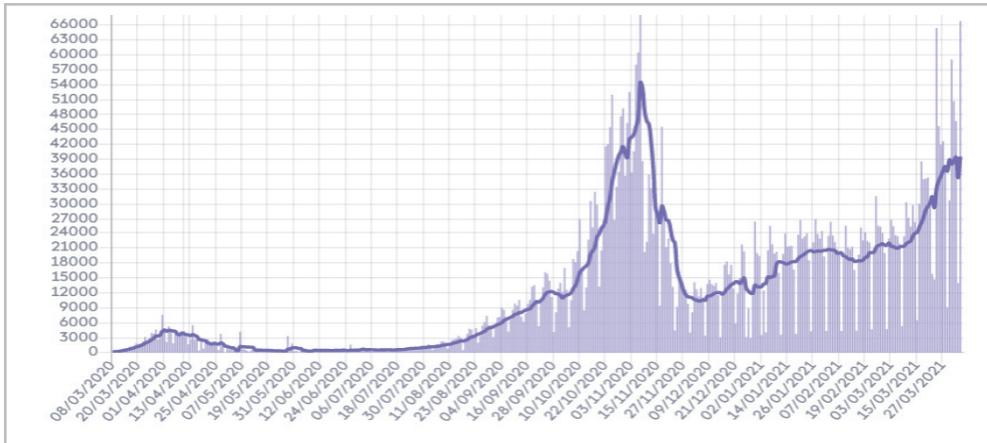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극심하며, 고정비라 할 수 있는 임대료 부분에서 상황의 심각성은 특히 두드러진다. 우리 정부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과 같은 여러 대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사태 앞에서 제도의 한계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부족한 역사적 경험은 다른 나라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채울 수 있다. 그러므로 상가 및 주거 임대차 관련 법률과 정책이 고도로 발달해 있고, 코로나19 사태에 유례없는 피해를 겪고 있는 프랑스의 대책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피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114만 명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했고, 일일 신규확진자의 수가 5만을 넘기도 했다. 여전히 프랑스의 코로나19 사태는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 또는 전국 단위의 봉쇄조치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동제한 조치는 물론이고, 일부 상점은 가게를 닫고 영업을 중단했다.

2020년 2월 15일에는 80세 중국인 여성이 프랑스에서의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로 기록되었고, 2020년 2월 29일 자로 5,000명 이상의 집합이 금지되었으며, 2020년 3월에는 유치원과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 2020년 3월 17일 자로 첫 번째 전면적 봉쇄조치가 취해졌다. 10만 명의 경찰행정이 동원되어 프랑스 내 거주자들의 이동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 덕분에 2020년 5월 11일 자로 봉쇄조치가 해제될 수 있었다.¹ 그러나 다시 같은 해 11월에는 엄청난 유행이 일어났다. 2020년 10월 29일 자로 두 번째 전면적 봉쇄조치가 시작되었다.²

1 프랑스 블루 홈페이지, 2020. 10. 25.자 기사, "Coronavirus : les dates-clés de l'épidémie en France" 참조 <https://www.francebleu.fr/infos/societe/coronavirus-les-dates-cles-de-l-epidemie-en-france-1603646805> (최종방문일: 2021년 4월 9일)

2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2020. 10. 30. 기사, "Covid-19 : un 2e confinement national à compter du 29 octobre minuit" 참조 <https://www.vie-publique.fr/en-bref/276947-covid-19-un-2e-confinement-national-compter-du-29-octobre-minuit> (최종방문일: 2021년 4월 9일)

그림1 프랑스앵포의 홈페이지의 코로나19 신규건수 통계³

위 그림에서 진한 보라색은 7일간 평균한 신규확진자의 숫자이고, 연한 보라색은 1일 신규확진자의 숫자이다. 2020년 11월 3일을 기점으로 확산세가 절정에 다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I. 프랑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책

1. 세액감면

우리나라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세액공제조치와 유사하게 프랑스에서도 2021년도 법률에 근거하여 임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준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의 혜택을 준다.

이 혜택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료를 확정적으로 포기한 경우에 적용되며, 임차인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사업장이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작된 폐쇄조치로 인하여 공공의 출입이 금지되었거나, 사업장이 2020년 3월 30일 데크레 제2020-371호 별지 제1호상의 분류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어야 하며, ② 5,00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곳이어야 하며, ③ 유럽규정에 비추어 2019년 12월 31일 자로 경영곤란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④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 아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위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임대인은 임대료 감면에 따른 혜택으로 세액공제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직계존비속, 동거가족 또는 「국세기본법」

3 <https://www.francetvinfo.fr/sante/maladie/coronavirus/infographies-covid-19-morts-hospitalisations-age-malades-l-evolution-de-l-epidemie-en-france-et-dans-le-monde-en-cartes-et-graphiques.html> (최종방문일: 2021년 4월 7일)

(CGI) 제39조상의 특수 관계가 존재할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한다.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함으로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으므로, 이는 주목할 만하다.

「2021년도 재정을 위한 2020년 12월 19일자 법률 제2020-1721호」 제20조는 감면액의 50%에 대하여 세액공제혜택을 정하고 있다. 동 조문의 내용과 개략적인 번역은 아래와 같다.

Article 20

제20조

I.-1. Les bailleurs, personnes physiques domiciliées en France au sens de l'article 4 B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ou personnes morales, peuvent bénéficier d'un crédit d'impôt au titre des abandons ou renoncations définitifs des loyers hors taxes et hors accessoires échus au titre du mois de novembre 2020, lorsqu'ils sont afférents à des locaux situés en France et consentis, au plus tard le 31 décembre 2021, au profit d'entreprises locataires qui remplissent les conditions suivantes :

I.-1. 「국세기본법전」 제4B조가 의미하는 프랑스 내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인 임대인은 2020년 11월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임대료에 대하여, 그것이 프랑스 내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한 것이고, 2021. 12. 31.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의 이익을 위해 동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세금 및 기타 공과금을 제외하고 확정적으로 포기하거나 면제한 임대료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 Louer des locaux qui font l'objet d'une interdiction d'accueil du public au cours de la période mentionnée au premier alinéa du présent 1 ou exercer son activité principale dans un secteur mentionné à l'annexe 1 du décret n° 2020-371 du 30 mars 2020 relatif au fonds de solidarité à destination des entreprises particulièrement touchées par l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financières et sociales de la propagation de l'épidémie de covid-19 et des mesures prises pour limiter cette propagation, dans sa rédaction en vigueur à la date de publication de la présente loi ;

1.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공공의 출입을 금지하는 대상이 된 사업장의 임대차 또는 본 법률이 공포된 날의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영향에 의하여 특별히 타격을 입은 기업을 위한 연대기금 및 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관한 2020. 3. 30. 데크레 제2020-371호 상의 별지 제1호상의 영역을 주요활동영역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임대차.

2. Avoir un effectif de moins de 5 000 salariés. Ce seuil est calculé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au I de l'article L. 130-1 du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2. 5,000명 미만을 고용한다. 이 상한은 「사회보장법전」 제L.130-1조 I상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3. Ne pas être en difficulté au 31 décembre 2019, au sens du règlement (UE) n° 651/2014 de la Commission du 17 juin 2014 déclarant certaines catégories d'aides compatibles avec le marché intérieur en application des articles 107 et 108 du traité, à l'exception des micro et petites entreprises, au sens de l'annexe I dudit règlement, ne faisant pas l'objet de l'une des procédures prévues aux titres II, III et IV du livre VI du code de commerce et n'ayant pas bénéficié d'une aide au sauvetage ou d'une aide à la restructuration, définies au 3.1 de la communication de la Commission européenne du 19 mars 2020 Encadrement temporaire des mesures d'aide d'Etat visant à soutenir l'économie dans le contexte actuel de la flambée de covid-19 ;
3. 조약 제107조 및 제108조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시장과 병존할 수 있는 특정범주의 지원을 선언하는 2014. 6. 17. 유럽위원회 제2014-651호 규정상의 경영곤란상태에 2019. 12. 31.자로 처해 있지 않으면서, 동 규정의 별지 제호상의 소규모기업을 제외하고, 「상법전」 제 6권 제2편 내지 제4편상의 절차의 대상이 아니며(우리나라의 도산절차들에 해당한다), Covid 19의 확산에 따른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2020. 3. 19. 유럽 위원회 코뮤니카시옹 3.1에 정의된 구제 또는 구조조정의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한다.
4. Ne pas être en liquidation judiciaire au 1er mars 2020.
4. 2020. 3. 1.자로 파산절차에 처해 있지 않아야 한다.

Pour l'appréciation de la condition d'effectif, il est tenu compte de l'ensemble des salariés des entités liées lorsque l'entreprise locataire contrôle ou est contrôlée par une autre personne morale au sens de l'article L. 233-3 du code de commerce.

고용요건을 산정함에 있어서, 임차인 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및 「상법전」 제L.233-2조상의 다른 법인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고용인을 산정한다.

La condition d'effectif ne s'applique pas aux entreprises locataires constituées sous forme d'association. Ces dernières doivent toutefois être assujetties aux impôts commerciaux ou employer au moins un salarié.

고용요건은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된 임차인의 영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임차인은 상업세의 부과대상이 되거나 적어도 1인을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Lorsque l'entreprise locataire est exploitée par un ascendant, un descendant ou un membre du foyer fiscal du bailleur, ou lorsqu'il existe des liens de dépendance au sens du 12 de l'article 39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entre elle et le bailleur, le bénéfice d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est subordonné à la condition que le bailleur puisse justifier par tous moyens des difficultés de trésorerie de l'entreprise locataire.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동거가족 또는 「국세기본법전」(CGI) 제39조 상의 특수 관계가 존재할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한다.

- I.-2. Le crédit d'impôt prévu au 1 du présent I s'applique également aux entreprises exonérées en application des articles 44 sexies, 44 sexies A, 44 septies, 44 octies, 44 octies A, 44 duodécies, 44 terdecies à 44 septdecies et 207 à 208 septies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 I.-2. I-1 상의 세액공제는 「국세기본법전」 제44조의6, 제44조의6A, 제44조의7, 제44조의8, 제44조의8A, 제44조의12, 제44조의13 내지 제44조의17 및 207조 내지 제208조의 적용으로 인해 감면받는 기업에게도 적용한다.
- I.-3. Pour les sociétés de personnes mentionnées aux articles 8 à 8 ter, 238 bis L et 239 septies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les groupements mentionnés aux articles 239 quater, 239 quater B et 239 quater C du même code et les placements collectifs définis à l'article L. 214-1 du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à l'exception des sociétés mentionnées à l'article L. 214-62 du même code, le crédit d'impôt est utilisé par leurs associés ou par les porteurs de parts ou actionnaires proportionnellement à leurs droits dans ces sociétés, groupements ou fonds.
- I.-3. 「국세기본법전」 제8조, 제8조의3, 제238bisL조, 제239조상의 회사, 동 법전 제239조의4, 제239조의4B, 제239조의4C의 단체 및 「금융재정법전」 제L.214-1조상의 투자조합체(동 법전 제L.214-62조상의 회사를 제외하고)를 위하여, 세액공제는 그들의 사원 또는 지분권자 또는 주주가 그 회사, 그룹 또는 자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비례하여 누릴 수 있다.
- II.-1. Le crédit d'impôt est égal à 50 % de la somme totale des abandons ou renoncations de loyers mentionnés au 1 du I, retenue, le cas échéant, dans la limite prévue au second alinéa du présent 1.
- II.-1. ① 세액공제는 I-1상의 임대료 중에서 포기하거나 면제한 총 금액의 50%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2항의 제한에 따른다.

(이하 생략)

2. 정액지급

임대료 지원을 위한 정액 지원금 제도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일드프랑스 지역 홈페이지에 따르면,⁴ 2020년 11월과 마찬가지로 행정조치로 가게를 폐쇄하였으나 임대료를 내야 하는 일드프랑스 지역의 상점, 바, 카페 및 식당에 대해 1,000유로(약 130만 원)를 지원한다. 이 지원은 10명 미만의 고용, 2백만 유로 이하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 중에서 2020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 공공접근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자 중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2 신청 홈페이지⁵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상가이지만, 실업률 상승과 이동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피해 역시 상당하다. 특히 2020년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HLM)에서 임대료의 미지급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임대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예컨대, 오아즈(Oise) 지역에서는 가구 당 1,000유로의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도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일부 가구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감면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임대료를 동결하고 지급을 연장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아즈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총 150,000유로의 임대료가 미지급된 상태이다.⁶

4 일드프랑스 홈페이지 2021. 1. 22.자 기사 "Relance des commerces : l'aide au loyer reconduite pour le mois de mars 2021" 참조 <https://www.iledefrance.fr/relance-des-commerces-laide-au-loyer-reconduite-pour-le-mois-de-mars-2021> (최종방문일: 2021년 4월 9일)

5 <https://www.iledefrance.fr/espace-media/relance-commerces/> (최종방문일: 2021년 4월 9일)

6 프랑스앵포 홈페이지, 2021. 2. 19.자 기사 "Loyers impayés en hausse : des dispositifs d'aide spécifiques proposés aux locataires dans l'Oise et la Somme" 참조 <https://france3-regions.francetvinfo.fr/hauts-de-france/loyers-impayes-en-hausse-des-dispositifs-d-aide-specifiques-proposees-aux-locataires-dans-l-oise-et-la-somme-1963381.html> (최종방문일: 2021년 4월 9일)

또한 프랑스 정부는 경제적 취약층인 저소득층 가정과 25세 미만 청년들을 위하여 2020년 11월 27일부터 100유로 내지 150유로 이상의 정액을 지급하였고, 자녀의 수에 따라 100유로씩 최대 4명까지 추가분을 지급하기도 했다.⁷

III. 공과금에 대한 조치

세액감면(credit d'impôt) 조치가 적용되기 전부터 프랑스 정부는 「국가긴급방역조치 연장 및 방역 위기운영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에 관한 2020년 11월 14일자 법률 제2020-1379호」 제14조에서 여러 특별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활동에 영향을 받는 사업소의 임대료, 수도세, 가스비 및 전기세 등의 지급에 관한 2020년 3월 25일자 오르도낭스 제2020-316호」의 영향을 받았고, 2020년 10월 17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2020년 11월 14일자 법률 제2020-1379호」 제14조는 「보건긴급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2020년 7월 9일자 법률 제2020-856호」 제1조 1의 제2호 또는 제3호 또는 「공중보건법전」 제L.3131-15조 1의 제5호에 따라 경제활동에 행정경찰조치를 받는 자연인 및 사법상 법인에게 적용된다. 그 적용범위는 데크레를 통하여 구체화 되는데, 데크레는 영업매출 및 행정경찰조치로 인해 감소한 영업손실 등의 기준을 정하게 된다.

「2020년 11월 14일자 법률 제2020-1379호」에 따라 동법이 정한 기간, 즉 자신의 영업활동이 행정조치의 영향으로 벗어난 때로부터 2개월까지는 임료와 공과금과 관련하여 이자, 위약금, 기타 금전적 제재가 면제되며, 임료의 연체 내지 미지급으로 인한 관련한 소의 제기 및 강제집행은 불허된다. 동기간 동안, 임료와 공과금을 담보하기 위한 인적·물적담보 역시 실행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보전소송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조항들은 강행규정이므로 임료의 연체 내지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제조항 등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개략적인 동법 제14조의 번역은 아래와 같다.⁸

7 프랑스정부 홈페이지, 2020. 11. 30. 공고, "Une aide exceptionnelle de solidarité pour les foyers les plus modestes et les jeunes" 참조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4438> (최종방문일: 2021년 4월 11일)

8 Yves Rouquet, 달로즈 약쥬알리테 홈페이지 2020. 11. 20. 기고문, "Covid-19 : la sauvegarde des intérêts des professionnels locataires s'organise" <https://www.dalloz-actualite.fr/flash/covid-19-sauvegarde-des-interets-des-professionnels-locataires-s-organise#.YGfg9GnlzY> (최종방문일: 2021년 4월 9일)

LOI n° 2020-1379 du 14 novembre 2020 autorisant la prorogation de l'état d'urgence sanitaire et portant diverses mesures de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 (1)

「국가긴급방역조치 연장 및 방역위기운영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에 관한 2020년 11월 14일자 법률 제2020-1379호」

Article 14

제14조

- I. Le présent article est applicable aux personnes physiques et morales de droit privé exerçant une activité économique affectée par une mesure de police administrative prise en application des 2° ou 3° du I de l'article 1er de la loi n° 2020-856 du 9 juillet 2020 organisant la sortie de l'état d'urgence sanitaire ou du 5° du I de l'article L. 3131-15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y compris lorsqu'elle est prise par le représentant de l'Etat dans le département en application du second alinéa du I de l'article L. 3131-17 du même code. Les critères d'éligibilité sont précisés par décret, lequel détermine les seuils d'effectifs et de chiffre d'affaires des personnes concernées ainsi que le seuil de perte de chiffre d'affaires constatée du fait de la mesure de police administrative.
- I. 본조는 「보건긴급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2020년 7월 9일자 법률 제2020-856호」 제1조 I의 제2호 또는 제3호 또는 「공중보건법」 제L.3131-15조 I의 제5호(같은 법전 L.3131-15조 I 제2항의 적용에 따라 데파트명(道)이 국가기관으로서 취한 조치를 포함한다)에 따라 경제활동 등에 행정경찰조치를 받는 자연인 및 사법상 법인에게 적용된다. 선별기준은 데크레로 정하며, 이 데크레는 인원, 매출규모 상한 및 행정조치로 인한 영업손실과 관련된 기준을 정한다.
- II. Jusqu'à l'expiration d'un délai de deux mois à compter de la date à laquelle leur activité cesse d'être affectée par une mesure de police mentionnée au I, les personnes mentionnées au même I ne peuvent encourir d'intérêts, de pénalités ou toute mesure financière ou encourir toute action, sanction ou voie d'exécution forcée à leur encontre pour retard ou non-paiement des loyers ou charges locatives afférents aux locaux professionnels ou commerciaux où leur activité est ou était ainsi affectée.
- II. ① 그들의 영업활동이 I상의 행정조치의 영향으로 벗어난 때로부터 2개월의 기간까지는, I에서 정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영업이 영위되는 또는 영위되었던 상점 또는 사무소의 임료와 공과금과 관련하여 그 지급의 지체나 미지급으로 인한 이자, 위약금, 기타 금전적 조치, 소의 제기, 강제집행이 부과될 수 없다.

Pendant cette même période, les sûretés réelles et personnelles garantissant le paiement des loyers et charges locatives concernés ne peuvent être mises en œuvre et le bailleur ne peut pas pratiquer de mesures conservatoires.

② 동 기간 동안, 임대료나 임대차와 관련된 공과금의 지급을 위한 물적·인적담보는 실행될 수 없으며, 임대인은 보전조치를 할 수 없다.

Toute stipulation contraire, notamment toute clause résolutoire ou prévoyant une déchéance en raison du non-paiement ou retard de paiement de loyers ou charges, est réputée non écrite.

③ 이에 반하는 약정, 특히 임대료 또는 공과금의 미지급 또는 지급의 지체로 인한 해제조항 또는 권리박탈에 관한 조항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III. Le II ne fait pas obstacle à la compensation au sens de l'article 1347 du code civil.

III. II는 「민법전」 제1347조상의 상계를 하는 것은 방해하지 아니한다.

IV. Le II s'applique aux loyers et charges locatives dus pour la période au cours de laquelle l'activité de l'entreprise est affectée par une mesure de police mentionnée au I.

IV. ① II는 기업의 활동이 I상의 행정조치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서 적용한다.

Les intérêts ou pénalités financières ne peuvent être dus et calculés qu'à compter de l'expiration du délai mentionné au premier alinéa du II.

② 이자와 위약금 등은 II 제1항의 기간이 만료한 후부터만 이행청구할 수 있고 정산된다.

En outre, les procédures d'exécution qui auraient été engagées par le bailleur à l'encontre du locataire pour non-paiement de loyers ou de charges locatives exigibles sont suspendues jusqu'à la date mentionnée au même premier alinéa.

③ 나아가, 임대인이 임대료 또는 공과금의 이행기 이후의 미지급을 이유로 한 이행소송은 제 1항에 정한 날까지 정지된다.

V. Jusqu'à l'expiration du délai mentionné au premier alinéa du II, ne peuvent procéder à la suspension, à l'interruption ou à la réduction, y compris par résiliation de contrat, de la fourniture d'électricité, de gaz ou d'eau aux personnes mentionnées au I pour non-paiement par ces dernières de leurs factures :

1. Les fournisseurs d'électricité titulaires de l'autorisation mentionnée à l'article L. 333-1 du code de l'énergie ;
2. Les fournisseurs de gaz titulaires de l'autorisation mentionnée à l'article L. 443-1 du même code ;
3. Les fournisseurs et services distribuant l'eau potable pour le compte des communes compétentes au titre de l'article L. 2224-7-1 du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V. ① II 제1조상의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는 I상의 자에 대하여 이들의 미지급에 대한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에 관한 공급계약 해지뿐 아니라 공급의 정지, 중단, 제한을 할 수 없다.

1. 「에너지법전」 제L.333-1조상의 허가를 받은 전기공급업자.
2. 동 법전 제L.433-1조상의 허가를 받은 가스공급업자.
3. 「지방자치단체법전」 제L.2224-7-1조상의 권한을 가진 꼬윈의 계산으로 수도의 공급 및 배급을 하는 자.

En outre, les fournisseurs d'électricité ne peuvent procéder au cours de la même période à une réduction de la puissance distribuée aux personnes concernées.

② 또한, 전기공급업체는 동일한 기간 동안 관련된 자들에 대한 공급전력을 감소시킬 수 없다.

Le présent V s'applique aux contrats afférents aux locaux professionnels ou commerciaux où l'activité des personnes concernées est affectée par une mesure de police administrative mentionnée au I.

③ 본 V는 지원대상자의 활동이 I상의 행정경찰조치를 받는 사무소나 상점에 대해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Les personnes mentionnées au même I attestent qu'elles remplissent les conditions pour bénéficier du présent V, selon des modalités précisées par décret.

④ 동 I상의 자는 자신이 본 V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음을 데크레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소명하여야 한다.

VI. Les fournisseurs d'électricité titulaires de l'autorisation mentionnée à l'article L. 333-1 du code de l'énergie et les fournisseurs de gaz titulaires de l'autorisation mentionnée à l'article L. 443-1 du même code alimentant plus de 100 000 clients, les fournisseurs d'électricité qui interviennent dans les zones non interconnectées au réseau métropolitain continental, les entreprises locales de

distribution définies à l'article L. 111-54 dudit code ainsi que les fournisseurs et services distribuant l'eau potable pour le compte des communes compétentes au titre de l'article L. 2224-7-1 du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sont tenus, à la demande des personnes mentionnées au I du présent article, de leur accorder le report des échéances de paiement des factures exigibles entre le 17 octobre 2020 et l'expiration du délai mentionné au premier alinéa du II et non encore acquittées. Ce report ne peut donner lieu à des pénalités financières, frais ou indemnités à la charge des personnes précitées.

- VI. ① 100,000명 이상의 고객을 가진 「에너지법전」 제L.333-1조상의 허가를 받은 전기공급업자 및 동 법전 제L.433-1조상의 허가를 받은 가스공급업자, 본토의 망과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법전」 제L.2224-7-1조상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계산으로 수도의 공급 및 배급을 하는 자는 본조 I상의 자의 요구에 대하여 2020. 10. 17.부터 II 제1조의 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아직 납입되지 아니한 공과금의 납입을 연기해 주어야 한다. 이 연기로 인하여 전술한 자들의 부담으로 금전적 위약금, 비용,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없다.

Le paiement des échéances ainsi reportées est réparti de manière égale sur les échéances de paiement des factures postérieures, sur une durée ne pouvant être inférieure à six mois.

- ② 이행기가 도래한 지급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향후 청구서의 지급기일에 균등하게 분배되어 청구된다.

Le présent VI s'applique aux contrats afférents aux locaux professionnels ou commerciaux où l'activité des personnes concernées est affectée par une mesure de police administrative mentionnée au I.

- ③ 본 VI 지원대상자의 활동이 I상의 행정경찰조치를 받는 사무소나 상점에 대해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Lorsqu'elles demandent à leur fournisseur le rééchelonnement du paiement des factures, les personnes mentionnées au même I attestent qu'elles remplissent les conditions pour bénéficier du présent VI, selon des modalités précisées par décret.

- ④ 지원대상자가 그들의 공급자에게 공과금 지급의 재분할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동 I상의 자는 자신이 본 VI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음을 데크레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소명하여야 한다.

VII. Le présent article s'applique à compter du 17 octobre 2020.

VII. 본조는 2020. 10. 17.부터 적용한다.

VIII. Le présent article est applicable à Wallis-et-Futuna.

VIII. 본조는 왈리스-푸투나에도 적용한다.

IV. 임차료에 관한 사법상 조치

프랑스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프랑스 정부의 예산편성 규모는 약 5,000억 유로에 이른다.⁹ 그러나, 프랑스의 제도는 예산지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프랑스의 상가 임대차와 관련하여 특히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몇몇 제도들이 있다. 바로 많은 상점들이 가입해있는 영업보험에 관한 파리지방법원의 판례와 사정변경으로 인한 임대료의 변경에 관한 부분이다. 나아가,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차 종료 후 집행을 저지하는 기간을 연장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내에서는 영업보상 보험 내지 이익상실 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 가입률이 매우 낮고, 가입한 경우에도 대부분 대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국내 농가에서는 정부지원에 힘입어 다수 가입을 하고 있으나, 농가는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의 영업보상 보험에 관한 사건을 접할 수 있다. 2020년 5월 22일 파리상사법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상사 관련 보험에 관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바로 약사보험사(AXA)를 상대로 한 2020년 5월 22일 파리상사법원 제2020017022호 사건이다. 또 2020년 9월 17일자로 역시 파리상사법원은 약사보험사에게 영업폐쇄 기간 동안 손실을 입은 5개의 상점에 대해서 이를 보상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¹⁰ 프랑스 「보험법전」 제L.113-1조는 “우연한 사정이나 피보험자의 과책으로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도 보험자가 부담하나, 보험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즉,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폐쇄된 기간 동안의 손실을 보험상품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은 장려할만하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감염병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보조하에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장려하는 등 이에 관한 가입혜택을 주어 국가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9 알에프아이 2020. 11. 4. 기사, “French government promises another €20bn in fourth revision of Covid budget” 참조 <https://www.rfi.fr/en/france/20201104-french-government-promises-another-20-billion-euros-in-fourth-budget-of-covid-epidemic-economy-health> (최종방문일: 2021년 4월 28일)

10 르몽드 지 2020. 9. 17.자 기사 “Coronavirus : dans leur bras de fer avec Axa, les restaurateurs prennent l'avantage” 참조 https://www.lemonde.fr/economie/article/2020/09/17/coronavirus-dans-leur-bras-de-fer-avec-axa-les-restaurateurs-prennent-l-avantage_6052647_3234.html (최종방문일: 2021년 4월 9일)

한편,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대료감액청구권이 행사 가능할 것이라는 일부 의견과는 달리,¹¹ 프랑스의 주류적인 의견은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전」 제119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만 보인다. 2021년 1월 25일 보르도 가처분 사건¹²에서는 '보건위기로 인한 제1195조의 적용여부는 예견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을 해야 하므로 가처분 사건으로 심사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으나, 2020년 12월 11일 파리 가처분 사건에선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119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¹³ 이처럼 사정변경에 대해 법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전통적으로 프랑스가 사정변경을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 개정을 통해 그나마 임의규정으로 도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의 일부 상가 임대차 중에서는 임대료를 매출과 연동하여 책정하는 경우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수료 매장으로 불리는 일부 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대료 보장 조항과 같은 내용이 수수료 약정에도 불구하고 삽입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입법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2020년 3월 12일 마크롱 대통령은 겨울기간 동안에는 주거명도를 집행할 수 없는 제도에서 정한 기간을 두 달 더 연장한다는 「동계중지 제도의 연장을 위한 2020년 3월 25일자 오르도낭스 제2020-331호」를 발표했다. 보건긴급조치 이전에는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사이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는 국가 사법권의 부작위를 통한 일종의 지원이라 볼 수 있겠다.

Ordonnance n° 2020-331 du 25 mars 2020 relative au prolongement de la trêve hivernale 「동계중지 제도의 연장을 위한 2020년 3월 25일자 오르도낭스 제2020-331호」

Article 1 제1조

Pour l'année 2020, la période mentionnée aux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L. 115-3 du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et premier alinéa de l'article L. 412-6 du code d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est prolongée jusqu'au 31 mai 2020.

2020년도를 위하여, 「사회및가족소권법전」 제L.115-3조 제3항 및 「민사집행법전」 제L.412-6조 제1항상의 기간은 2020. 5. 31.까지 연장한다.

11 황재훈, [자유기고] 착한 임대인만 손해봐야 하나, 대한변협신문 2020. 8. 10.자 기사<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2> (최종방문일: 2021년 4월 9일)

12 2021. 1. 25. TJ Bordeaux Référé 20/01392

13 2020. 12. 11. TC Paris Référé 2020035120

Article 2

제2조

Pour l'année 2020, les durées mentionnées aux articles L. 611-1 et L. 641-8 du code d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sont augmentées de deux mois.

2020년도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전」 제L.611-1조 및 제L.641-8조상의 기간은 2개월 상향한다.

VI. 나가며

프랑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사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계약은 이를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 법과 같다'는 사적자치에 대한 존중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상가 임대차에 대한 정액 지급뿐 아니라 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면제 조치도 이뤄지고 있었다.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공역무적 성격을 가지는 계약에 관해서는 납입 시기를 조절하고 제한조치 등을 금지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이어지도록 했다. 전기판매사업이 이미 자율화된 프랑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행정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에 관해 기업과 보험사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중소기업인에게 행정조치로 인한 이익상실 보험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분명 추후에 있을 감염병 사태에 좋은 대비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의 감액청구에 대해 법원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많은 규제가 선행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감염병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주거 임차인의 주거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참고문헌

- 르몽드 지, https://www.lemonde.fr/economie/article/2020/09/17/coronavirus-dans-leur-bras-de-fer-avec-axa-les-restaurateurs-prennent-l-avantage_6052647_3234.html
- 일드프랑스 홈페이지, <https://www.iledefrance.fr/relance-des-commerces-laide-au-loyer-reconduite-pour-le-mois-de-mars-2021>
- 프랑스엔포 홈페이지, <https://www.francetvinfo.fr/sante/maladie/coronavirus/infographies-covid-19-morts-hospitalisations-age-malades-l-evolution-de-l-epidemie-en-france-et-dans-le-monde-en-cartes-et-graphiques.html>
- 프랑스엔포 홈페이지, <https://france3-regions.francetvinfo.fr/hauts-de-france/loyers-impayes-en-hausse-des-dispositifs-d-aide-specifiques-propose-aux-locataires-dans-l-oise-et-la-somme-1963381.html>
- 프랑스 블루 홈페이지, <https://www.francebleu.fr/infos/societe/coronavirus-les-dates-cles-de-l-epidemie-en-france-1603646805>
-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https://www.vie-publique.fr/en-bref/276947-covid-19-un-2e-confinement-national-compter-du-29-octobre-minuit>
-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4438>
- 황재훈, [자유기고] “착한 임대인만 손해봐야 하나”, 대한변협신문,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2>
- RFI, <https://www.rfi.fr/en/france/20201104-french-government-promises-another-20-billion-euros-in-fourth-budget-of-covid-epidemic-economy-health>
- Yves Rouquet, 달로즈 약취알리테 홈페이지, <https://www.dalloz-actualite.fr/flash/covid-19-sauvegarde-des-interets-des-professionnels-locataires-s-organise#.YGfg9GnllzY>

KLRI

맞춤형 법제정보 신청 안내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 법제 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결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내용 정보

-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법령의 제·개정 내용
 - 국내 현안에 대한 외국 법제 현황 및 내용
 - 정부 입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외국 법령 정보
 - 정부 부처 관련 업무에 대한 법령 정보
- ※ 개인적인 연구(예, 학위논문 작성) 관련 및 단순 법령은 제외되며,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범위의 정보제공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를 통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하단의 수요자 맞춤 서비스 중 “맞춤형 외국법제정보 신청” Click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최신외국법제정보 담당자에게 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메일주소 : foreignlaw@klri.re.kr
※ 신청시, 대상 국가 법령 및 제도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TEL. (044) 861-0471 FAX. (044) 868-1947
E-Mail. foreignlaw@klri.re.kr www.klri.re.kr

배포

- 정기간행물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 중입니다.
- 신청하시는 경우 ‘최신외국법제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미래혁신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글로벌 입법
연구 플랫폼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일 2021년 6월 30일 | 발행인 김계홍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 861-0300 | FAX (044) 868-9913

